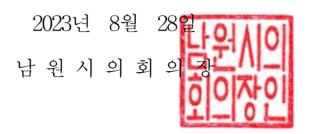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64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개정이유

인구감소는 모두에게 위기다. 다방면의 정책과 광범위한 지원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하는 숙제이다. 이 맥락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다자녀가정과 임산부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인구감소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